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36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8. 1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행정기구 명칭이 시군간에 각각 상이하여 행정기구 명칭의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시군간 통일된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하고,
-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실과 및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명칭변경
 - 내무과 ⇒ 자치행정과
 - 내무과장 ⇒ 자치행정과장
- 업무이관
 -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: 읍·면 ⇒ 본청 (종합민원실)
 - 야생조수 보호 : 산림과 ⇒ 도시환경과
 - 농민후계자 : 농업기술센터 ⇒ 산업과
 -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: 산업과 ⇒ 농업기술센터

개정근거

- 경남도 자치 12200-10604 ('99. 6. 30)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내무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4호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제9호 다목중 “산림보호” 다음에 “및 야생조수 보호”를 삭제하고, 동항제3호 및 제11호에 각각 바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건축신고등에 관한 사항

마. 야생조수 보호

제12조제2호중 “농민후계자”를 “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중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
② 거창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2조제2항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③ 거창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, 제8조, 제11조제1항·제2항, 제12조 및 별지 제1호·제6호 서식 내용중 “내무과장”을 “각각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④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3항제1호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⑤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2항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⑥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⑦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⑧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민방위재난관리과장”을 “건설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중 “재난관리계장”을 “재난관리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⑨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 서식 결재란중 “계”를 “담당자”로 “계장”을 “담당”으로 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내무과, 재무과, 사회복지과, 산업과, 지역경제과, 산림과, 건설과, 도시환경과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호 내지 2호 (생략)</p> <p>3호 (생략)</p> <p>가목 내지 마목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4. 내무과장</p> <p>5호 내지 8호 (생략)</p> <p>9호 (생략)</p> <p>가목 내지 나목 (생략)</p> <p>다.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 보호</p> <p>10호 (생략)</p> <p>11호 (생략)</p> <p>가목 내지 라목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4조 (실·과의 설치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 자치행정과,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호 내지 2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3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목 내지 마목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자치행정과장</p> <p>5호 내지 8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9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목 내지 나목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산림보호</p> <p>10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11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목 내지 라목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야생조수 보호</p>
<p>제12조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</p>	<p>제1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</p>